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8호 2014. 8. 7.(목)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제936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937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4
제93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3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규 칙】

【훈 령】

【예 규】

제228호 공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 세부기준 폐지기준	48
--	----

【고 시】

제2014-109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49
제2014-110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문	51
제2014-111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문	53

【공 고】

제2014-1049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5
---	----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 7.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7일

공주시 조례 제936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세무부서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제외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제5조(보조신청)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세무부서 경유)</u></p> <p><u>7. (현행 제6호와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u></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 ----- ----- ----- -----.</p> <p>----- <u>제외</u> <u>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공주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 7.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7일

공주시 조례 제937호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연락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공 주 시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주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공 주 시 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명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제 호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

방범대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위치 :

등록일자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제3조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별지]

(별 표)

과태료부과 · 징수기준

위 반 사 항	관련법 규	처분규정내 용	부 과 기 준			중개업종별 과 태 료
			위 반 회 수			
			1차	2차	3차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39 조 제2항 제3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40 만원	70 만원	100 만원	법인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2.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법 제39 조 제2항 제8호	"	40 만원	70 만원	100 만원	법인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3. 중개 완성시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등의 설명과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 조 제2항 제9호	"	40 만원	70 만원	100 만원	법인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4.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9 조 제2항 제1호	"	40 만원	70 만원	100 만원	법인
			30 만원	60 만원	100 만원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				
예고 제 호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사무소명			
	사무소 위치			
	성 명			
	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근거	부동산중개업 제39조	위반사 항 발 생 일	
	법위반내용			
과태료금액				
<p>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5조 및 공주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2조 규정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만약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주 시 장 (인)</p>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전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허가(자격증) 번호		상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겠습니다.</p>				
<p>년 월 일</p> <p>공 주 시 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관련됩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개사무소	허가번호		상호	
	소재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태료 금 액	
	부과 관청		이의제기일 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공 주 시 장 (인)</div>				

[별지 제4호 서식]

인수증 (제25조제3항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인)

성명:

(서명 또는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인)

다. 생년월일:

라. 인수일자:

성명:

(서명 또는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그 밖의()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④ 그 밖의()

다. 신청지역(지번 및 도엽번호)

5. 그 밖에 사항

공주시장 귀하

[제8조 공주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신 고 자 (서명)				

[제10조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 명칭	소재지	비고
공주시시립도서관 응진관	공주시 고마나루길 17	
공주시시립도서관 강북관	공주시 월송동현로 51	

[별표 2]

문화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오전 08:00 ~ 12:00	4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40,000	

2.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품명	사용료	비고
빔 프로젝트	10,000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봄
조명	20,000	
냉·난방	30,000	

[별표 3]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청구기호	저 자	도서명	수량	비 고
대 출 자 료 명					
대출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부터				
대출사유	「공주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관외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 근무지 주소 : 근무지 전화번호 : 직위(직명) :				
공 주 시 장 귀하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와 서명일자</u>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생년월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소나 <u>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및 확인) ① ----- ----- -----<u>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u></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이름, 생년월일, 주소,</u></p>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연락처를-----

-----.

-----.

③·④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 7.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7일

공주시 조례 제938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공주시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산” 을 “합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를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부시장” 을 “시장은 공주시 부시장” 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 를” 을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여비규정” 이라 한다) 별표 제1호의 라목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의 “별표 1” 을 적용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제1호 중 “제8조의2” 를 “여비규정 제8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제17조” 를 “여비규정 제17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 제1항” 을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를 “안전행정부장관과”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제5조제6호 중 “제27조의 규정은” 을 “여비규정 제27조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의 별표 1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따라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u>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u>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u>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등 <u>기타 필요한 사항</u></p>	<p>제1조(목적) ----- <u>공주시 지방공무원</u>-----</p> <p>-----</p> <p>-----</p> <p>-----.</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u>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에 대해서는 <u>예산의 범위</u>-----</p> <p>-----</p> <p>-----.</p> <p>② -----<u>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u>-----</p> <p>-----</p> <p>-----</p> <p>-----</p> <p>-----</p> <p>-----</p> <p>-----</p> <p>-----</p> <p>-----<u>합산</u>-----</p> <p>-----.</p> <p>③ ----- <u>그 밖의</u>-----</p>

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주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호의 라목을 적용한다. “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별표
의 기준에 따라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
-----.
2. 여비규정 제17조-----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 은 “동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안전행정부장관과 -----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는 -----
-----.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

8. 여비규정의 별표 1의 “ 해당

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 7. 28)에서 의결된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7일

공주시 조례 제93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1. 단체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실, 원)

구 분	학생단체(1실 10명 기준)	일반단체(1실 10명 기준)	
		주 중	주 말
숙박비	100,000	100,000	120,000

※ 비고: 학생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며,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사용료 납부.

2. 개별 숙박동 사용료

(단위: 1박 1동, 원)

구 분	정 원	요 금		객실수 (방수)	비 고
		주 중	주 말		
고급형 (F타입)	6명	150,000	200,000	4(2)	온돌, 욕조
전통형 (I타입)	4명	150,000	200,000	3(2)	온돌, 욕조
일반형 1 (G타입)	15명	200,000	250,000	1(3)	욕조
일반형 2 (2C타입)	4명	100,000	120,000	2(1)	온돌
	3명	80,000	100,000		온돌, 욕조
실속형 (H4타입)	2명	50,000	70,000	4(1)	공동욕실
초가형 (C타입)	3명	130,000	150,000	3(1)	온돌

※ 비고: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목적실 사용료

가. 숙박하는 자가 사용 할 경우: 무료

나.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 2시간 기준 30,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주시 주최·주관일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14:00까지 10,000원, 16:00까지 20,000원, 16:00 이후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5. 오토캠핑장 사용료

20,000원/1일 1대

6.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

30,000원/1일

공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 세부
기준 폐지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4년 8월 7일

공주시 예규 제228호

공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 세부기준 폐지기준

공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경감 세부기준을 폐지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2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당간지주길 7 (반죽동) 외 4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 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명령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38-1	충청남도 공주시 당기리후림 7 (반죽동)	2014.07.29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2	충청남도 공주시 정학동 189-1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2길 26 (정학동)	2014.07.29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94-3	충청남도 공주시 이나리3길 16-9 (금성동)	2014.07.29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과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4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64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로 178 (월송동)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15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화로 94-25 (신관동)	2014.07.29	신축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6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48-27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화로 94-27 (신관동)	2014.07.29	신축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7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신가-1	충청남도 공주시 반영로 149 (신관동)	2014.07.29	신축	20100202	지역특성과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37-44	충청남도 공주시 특수길 42-2 (신관동)	2014.07.29	신축	20100112	역사적특성 반영
9	충청남도 공주시 방장동 652, 경상동 738	충청남도 공주시 공덕로 14-36 (경상동)	2014.07.29	신축	20100112	노후단지를 정하는 길이와 하여 중간길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방장동 652-1, 경상동 741, 738-1	충청남도 공주시 공덕로 14-48 (경상동)	2014.07.29	신축	20100112	노후단지를 정하는 길이와 하여 중간길로 부여
11	충청남도 공주시 방장동 699, 경상동 735	충청남도 공주시 공덕로 14-102 (경상동)	2014.07.29	신축	20090825	해당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백교리 12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유구로외로 265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1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백교리 100-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신제골길 34-19	2014.07.29	신축	20100112	해당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백교리 301-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보포정아길 6-40	2014.07.29	신축	20100112	해당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신터길 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신터길 44-13	2014.07.29	신축	20100112	해당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문곡리 4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면 문곡길 320	2014.07.29	신축	20100112	문곡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신터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촌리 1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지근리길 43	2014.07.29	노박	20100112	문곡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신터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정리 331-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정길 23	2014.07.29	신축	20100112	신한 사명을 걸러내는 서양문 유사한 기원이 있어 추가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곡리 65-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지사골로 3-2	2014.07.29	신축	20100202	도라가 많이 나오는 죽이래라 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곡리 65-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지사골로 3-2	2014.07.29	신축	20131023	탄천화반산정단지중과 다른 도로명 부여
2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화곡리 113-1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산정단지길 83	2014.07.29	신축	20100112	탄천화반산정단지중과 다른 도로명 부여
2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곡리 11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사봉로 337	2014.07.29	신축	20100112	간혹 유곡을 가는 길에 국사봉이라는 큰 봉우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사봉로라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곡리 34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곡리 25	2014.07.29	신축	20100202	마을에 큰 장지나무가 있어 응암이라 불리는 지역마을 명칭 활용
2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곡리 34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곡리 25	2014.07.29	신축	20100112	마을에 큰 장지나무가 있어 응암이라 불리는 지역마을 명칭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459-3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9	2014.07.29	신축	201001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9
2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285-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로 270	2014.07.29	신축	20100112	송곡리를 관통하는 주요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42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로 12	2014.07.29	신축	20100112	장비 생활 가진 사람이 많아 살았다 하여 장기타라 불린 후 어린이 마을이 생겨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2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423-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시흥길 107-2	2014.07.29	신축	20100112	신의 모양이 뿔의 마리와 같다 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423-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시흥길 107-4	2014.07.29	신축	20100112	신의 모양이 뿔의 마리와 같다 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730-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로 270	2014.07.29	신축	20100112	지역특성과 일관번호 방식 복합 반영
3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935, 944, 94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로 88-2	2014.07.29	신축	20100112	마을이 많았던 마을이라 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리 22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원로 6-11	2014.07.29	신축	20100112	마을이 많았던 마을이라 하여 생긴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원리 4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원길 132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기관과 관공서 건물로 구성된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원리 125-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용원길 34-12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기관과 관공서 건물로 구성된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용원리 44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동로길 116	2014.07.29	신축	20100112	길 주변 대표작인 신이 불화산이라 하여 신의 명칭을 활용하여 불화산길로 부여
3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용원리 17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로 31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기관과 관공서 건물로 구성된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용원리 185-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용원로 20	2014.07.29	신축	20100112	행정기관과 관공서 건물로 구성된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
3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원리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비사덕천길 149	2014.07.29	신축	20111209	나라, 도, 읍, 면, 리, 반, 마을, 촌, 자연마을을 정하는 도로명으로 다른 지역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비사덕천로 부여
3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원리 18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원길 124	2014.07.29	신축	20100112	도곡리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곡길로 부여
40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호계리 406-3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호계로 41-11	2014.07.29	신축	20100112	해당 행정구역명과 길이가 있는 죽이래라 하여 중간길로 부여
41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호계리 338, 354-1, 354-13, 354-2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호계로 201-1	2014.07.29	신축	20110506	마을 지형이 뿔의 아가리와 같다 하여 뿔구리길로 부여
42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백교리 720	충청남도 공주시 시곡면 백포길 3	2014.07.29	신축	20100112	뿔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용인 마을에 있는 뜻이 있었다 하여 뿔포길로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2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용수봉갑길 329-40의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증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봉간리 46-8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봉간리 46-8, 46-7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용수봉길 329-38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용수봉길 329-40	2010.01.12	용수리와 봉간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수봉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봉간리 46-7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봉간리 46-8, 46-7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용수봉길 329-40	충청남도 공주시 신룡면 용수봉길 329-40	2010.01.12	용수리와 봉간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수봉길로 부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278-8, 2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278-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마리길 10-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마리길 10-2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2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278-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마리길 10-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마리길 10-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32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32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홍장약로 8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홍장약로 84	2010.01.12	내룡리의 예전 명칭 왕홍과 구왕-중장의 장과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홍장이이라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29.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제민천2길 26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189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천2길 26 (중학동)	2014.7.29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17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풍정길 31	2014.7.29	건물말소	

공주시 공고 제 2014 - 1049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高度地區 해제지역의 건축높이 규제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도모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이중으로 표현된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표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으로 일원화 (안 2조3호)

- 저층건물 밀집지역에서 주동의 최고높이(40m)의 적용방법 완화
 -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상 산정방법 적용(영119조)
 -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탑 등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도시재생과(도시계획담당)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702 / 전화 041-840-8550 / FAX 041-840-23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및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을 “에 따른 일반상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를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